

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신고 제도 안내

발주자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의무

- | **관련규정** 정보통신공사법 제8조제1항 및 제76조제3호
- | **주요내용**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,000㎡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를 발주하는 발주자는 용역업자에게 공사의 감리를 발주하여야 함
※ 용역업자는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하거나 기술사사무소의 개설자로 등록된 자로서 정보통신 관련 분야의 자격을 보유하고 용역업을 경영하는 자를 말함
- | **감리용역 발주시기** 정보통신공사 착공 전까지
- | **행정처분** 발주자가 용역업자에게 감리를 발주하지 않거나, 배치 기준(공사기간 동안 감리원 배치)에 적합하지 않게 발주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

용역업자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의무

- | **관련규정** 정보통신공사법 제8조제2항 및 제8조제3항,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별표10
- | **주요내용**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는 감리원을 공사가 시작하기 전에 배치해야 하며,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감리원 배치현황을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함
- | **신고대상** 6층 이상이거나 연면적 5,000㎡ 이상인 건축물에 설치되는 정보통신설비의 설치공사
- | **신고기한** 정보통신공사 착공일로부터 30일 이내
(공사가 30일 이내에 완료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)
- | **제출서류**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서, 감리원 배치계획서(발주자의 확인을 받은 것), 공사감리용역계약서, 감리원 자격증, 재직증명서(자체 감리의 경우),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, 공사현장간 거리도면(1명의 감리원이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지역에서 둘 이상의 공사를 감리하는 경우)
※ 신고서 및 배치계획서 양식은 서울시청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
(<http://news.seoul.go.kr/gov/archives/511614>)
- | **행정처분** 정보통신공사의 감리를 발주받은 용역업자가 감리원을 배치·변경할 때, 해당 공사를 시작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·도지사에게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50만 원 부과
- | **신고방법**
 - ① 문서24(<http://docu.gdoc.go.kr>) 를 통해 접수
※ 문서24 수신처: 서울특별시 디지털정책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
 - ② 우편 또는 방문 접수
※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3동 2층 정보통신보안담당관



신고서식



문서24